정보통신망관리규정 4-1-11

규정번호 4-1-11
제정일자 1998.9.1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5차 개정
관리부서 정보관리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 중인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우리대학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다만, 학과의 실험실습실에서 설치 운영하는 근거리통신망(LAN)설비는 제외하며, 이를 접속할 경우에는 정보관리팀의 접속장치까지만 정보통신망으로 간주한다.(개정 2018.08.27.,2024.7.24)
2. “정보통신망설비”라 함은 통신선로, 접속장비, 정보통신망 서비스장비,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개정 2024.7.24.)
3. “통신선로”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통신선로로 가입자 단말 접속장치까지의 통신선로(광케이블, UTP케이블, 전용회선 등)를 말한다.
4. “접속장비”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선로 접속장치(스위치, 브릿지, 라우터 등)와 외부망과의 접속을 위한 장비(라우터모뎀 등) 및 단말연결을 위한 접속장치(랜카드 등) 등을 말한다.(개정 2024.7.24.)
5. “정보통신망 서비스장비”라 함은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응용서비스(전자우편, 원격로그인, 파일전송 등)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도메인서버, 네트웍관리서버 등)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라 함은 네트웍관리용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관리 시스템(NMS), TCP/IP등)와 사용자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TCP/IP, FTP, TELNET 등)를 통칭한다.(개정 2024.7.24.)

제3조(정보통신망 관리) ① 정보통신망의 모든 관리와 운영은 정보관리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08.27)

② 학술정보원의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합관리하는 정보통신망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③ 정보통신망의 발전계획의 수립, 운영비용 징수방안, 불법사용자 징계방안 등 운영상의 중요 결정사항은 정보화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한다.

④ 관리자는 제6조에 의거 사용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 설비를 단절, 사용금지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및 손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학술정보원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제4조(정보통신망의 개발 및 안정성) ① 학술정보원장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조명변경 2014.06.09.,개정 2017.02.27., 2018.08.27.)

② 학술정보원장은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교내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4.06.09., 개정 2017.02.27., 2018.08.27.,2024.7.24)

③ 각 부서장이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행정서식 및 각종코드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술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06.09., 개정 2024.7.24)

제5조(관리자 의무) ① 관리자는 정보통신망 관리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정보통신망시스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아야하고 운영·관리한다.(개정 2024.7.24.)

③ 관리자는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불법정보통신망 사용자 발견 시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사용자 의무) ① 정보통신망 설비는 우리대학의 재산으로 파손 및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며, 사용자는 정보통신망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고의로 인한 손상 또는 분실 시에는 그 설비의 복구, 수선 및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설비의 이동, 변경, 해체 시에는 반드시 학술정보원장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8.27)
3. 사용자는 사용자 설비를 정보통신망에 물리적으로 접속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술정보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08.27)
4. 사용자가 우리대학에서 이직할 때에는 사용하던 IP정보를 학술정보원장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개정 2018.08.27.,2024.7.24)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되며, 정보통신망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의로 타인의 정보를 파괴시키는 행위
2. 타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3. 불법으로 전산자원을 억세스하는 행위
4. 전산자원(시스템, 메모리, 하드용량 등)을 낭비케 하거나 불필요한 인력소모를 유발시키는 행위
5. 타 이용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등의 행위

6. 기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사용자권한) 사용자는 정보통신망과의 단말접속을 통하여 각종 학술정보원(정보관리팀)의 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를 서로 공유 및 교환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08.27.,2024.7.24)

제8조(정보화교육의 확대) 학술정보원장은 교직원의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초지식 및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2024.7.24)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7조, 제8조)